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 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3. 제안이유

- 적용시한이 만료(1991. 12. 31)됨에 따른 시한연장임
- 목적 : 새마을사업지원

4. 주요골자

- 새마을사업을 위한 취득과 등기·등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
 - 취약지 대체 사업에 따른 독립가옥 집단화 사업
 - 도로변 불량주택 정돈사업
 - 소도읍 가꾸기사업 등

5. 검토의견

-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취득
 - 취약지 대체사업에 따른 독립가옥 집단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대체취득

- 분산농지 집단화에 따른 토지의 대체취득
-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로변 불량주택 정돈사업 및 수해상습지마을대책 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대체취득
-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도읍가꾸기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물 또는 토지의 대체취득시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시행 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개정하는 것으로 계속적인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하여는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